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실용신안공보(Y1)

(45) 공고일자 2017년06월27일
(11) 등록번호 20-0483726
(24) 등록일자 2017년06월12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24F 15/12 (2006.01) B65D 43/22 (2006.01)
(52) CPC특허분류
A24F 15/12 (2013.01)
B65D 43/22 (2013.01)
(21) 출원번호 20-2017-0001669
(22) 출원일자 2017년04월04일
심사청구일자 2017년04월04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JP2005204561 A
(뒷면에 계속)

(73) 실용신안권자
김선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3, 2동 201호
(시흥동, 럭키아파트)
(72) 고안자
김선숙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47길 43, 2동 201호
(시흥동, 럭키아파트)
(74) 대리인
특허법인메이저

전체 청구항 수 : 총 3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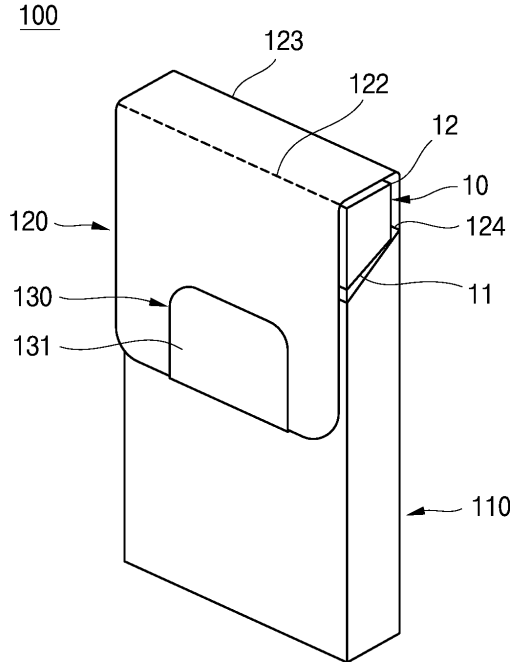
심사관 : 양경진

(54) 고안의 명칭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

(57) 요약

본 고안은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상부가 개방되고, 담뱃갑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공간이 형성되며, 전면에 제1 마그네틱이 구비된 본체부; 상기 본체의 상부에 개폐되도록 형성되고, 내부에 제2 마그네틱이 구비된 덮개부; 및 상기 덮개부 단부에 클립 형태로 결합되되 외측과 내측이 각각 제1 고정편과 제2 고정편으로 구
(뒷면에 계속)

대표도 - 도1



분되고, 상기 제2 고정편은 상기 제1 고정편 보다 길게 연장되어 연장된 부분이 상기 제2 마그네틱과 탈부착되도록 자성 결합되고, 상기 제1 고정편과 대향되는 부분이 상기 제1 마그네틱과 자성 결합에 의해 탈부착되도록 형성된 고정클립부;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에 수납된 담뱃갑의 뚜껑과 상기 덮개부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고정클립부를 상기 제1 고정편의 단부를 기준으로 상기 제2 고정편이 상기 제2 마그네틱과 탈착되도록 뒤로 젖힌 다음 상기 뚜껑의 내측을 삽입한 뒤 다시 상기 제2 마그네틱과 부착되도록 하여 담뱃갑의 뚜껑을 고정하여, 상기 덮개부를 개방하면 상기 뚜껑이 일체로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성으로 담뱃갑 케이스의 덮개와 담뱃갑의 뚜껑을 고정클립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담뱃갑 케이스의 덮개를 개방 시 담뱃갑의 뚜껑이 일체로 따라 개방됨과 동시에 담뱃갑의 몸체가 따라 상승되도록 하여 담배 꺼내기가 용이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2) CPC특허분류

B65D 2313/04 (2013.01)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20090006509 U

KR1020100092044 A

KR1020140116765 A

JP2016506341 A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상부가 개방되고, 담뱃갑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공간이 형성되며, 전면에 제1 마그네틱이 구비된 본체부;

상기 본체부의 상부에 개폐되도록 형성되고, 내부에 제2 마그네틱이 구비된 덮개부; 및

상기 덮개부 단부에 클립 형태로 결합되되 외측과 내측이 각각 제1 고정편과 제2 고정편으로 구분되고, 상기 제2 고정편은 상기 제1 고정편 보다 길게 연장되어 연장된 부분이 상기 제2 마그네틱과 탈부착되도록 자성 결합되고, 상기 제1 고정편과 대향되는 부분이 상기 제1 마그네틱과 자성 결합에 의해 탈부착되도록 형성된 고정클립부;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부에 수납된 담뱃갑의 뚜껑과 상기 덮개부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고정클립부를 상기 제1 고정편의 단부를 기준으로 상기 제2 고정편이 상기 제2 마그네틱과 탈착되도록 뒤로 젖힌 다음 상기 뚜껑의 내측을 삽입한 뒤 다시 상기 제2 마그네틱과 부착되도록 하여 담뱃갑의 뚜껑을 고정하여, 상기 덮개부를 개방하면 상기 뚜껑이 일체로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고정클립부는 상기 제1 고정편과 제2 고정편 사이에 상기 덮개부의 단부가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제2 고정편에 내측에 돌기가 형성되도록 버어링 홈을 형성하고, 상기 제1 고정편과 제2 고정편을 압착하여 상기 덮개부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덮개부가 닫혔을 때 상기 덮개부가 접히는 부분에 제1 안내선과 제2 안내선이 형성되고, 상기 덮개부가 개방되었을 때 상기 덮개부가 접히는 부분에 제3 안내선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

고안의 설명

기술분야

[0001] 본 고안은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담뱃갑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3] 최근에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이 의무화되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부착하는 것이다.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시행됐고 2017년 현재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28개 국가 등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1차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되다가 13년 만인 2015년 6월 통과가 이뤄졌다.

[0004] 이후 보건복지부가 담뱃갑 경고그림을 최종 결정, 고시하면서 국내 담배 제조사와 수입사는 2016년 12월 23일부터 이 경고그림을 담뱃갑 포장지 앞면과 뒷면 상단에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 크기로 표시하고 있다. 흡연 경고그림은 폐암·후두암·구강암·심장질환·뇌졸중 등 병변 관련 5종과 간접 흡연·조기 사망·피부 노화·임산부 흡연·성기능 장애 등 비병변 관련 5종 등 총10종이다. 이 그림들은 24개월 주기로 정기 교체하되, 그

내용을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에 고시하도록 했다.

- [0005] 이러한 경고그림은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혐오스럽기 때문에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때마다 경고그림을 봐야 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때문에 흡연자들은 이러한 경고그림을 회피하기 위해 담배케이스 또는 담뱃갑케이스를 사용한다.
- [0006] 한편, 담배케이스는 담뱃갑에서 날개의 담배 개비를 일일이 꺼내어 담배케이스에 다시 끼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담배를 보관하면서 담뱃재가 쌓여 이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0007] 또한, 담뱃갑케이스는 담뱃갑의 케이스를 개방하고, 또 담뱃갑의 뚜껑을 개방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 [0008] 또한, 담뱃갑케이스는 담뱃갑을 수납할 때 담뱃갑의 일부를 절개해서 수납을 하거나, 담뱃갑케이스를 개방하고 다시 담뱃갑의 뚜껑을 개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담뱃갑케이스 내에 담뱃갑에 수납된 담배를 꺼내는 것 또한 용이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선행기술문헌

특허문헌

- [0010] (특허문헌 0001)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0393576호 (2005.08.17)
- (특허문헌 0002)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0440203호 (2008.05.23)
- (특허문헌 0003) 대한민국 등록실용신안 제20-0283372호 (2002.07.12)
- (특허문헌 0004) 대한민국 공개특허 제10-2009-0026752호 (2009.03.13)

고안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 [0011] 상술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안출된 본 고안의 목적은 담뱃갑이 수납된 케이스를 개방 시 담뱃갑의 뚜껑이 일체로 개방되도록 하여 담뱃갑에 인쇄된 혐오 그림이 노출되지 않게 하는 담뱃갑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0012] 또한, 담뱃갑이 수납된 케이스를 개방 시 담뱃갑의 뚜껑이 따라 이동되면서 담뱃갑의 몸체가 따라 상승 이동되도록 하여 담배 꺼내기가 용이한 담뱃갑 케이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 [0014]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는, 상부가 개방되고, 담뱃갑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공간이 형성되며, 전면에 제1 마그네틱이 구비된 본체부; 상기 본체의 상부에 개폐되도록 형성되고, 내부에 제2 마그네틱이 구비된 덮개부; 및 상기 덮개부 단부에 클립 형태로 결합되되 외측과 내측이 각각 제1 고정편과 제2 고정편으로 구분되고, 상기 제2 고정편은 상기 제1 고정편 보다 길게 연장되어 연장된 부분이 상기 제2 마그네틱과 탈부착되도록 자성 결합되고, 상기 제1 고정편과 대향되는 부분이 상기 제1 마그네틱과 자성 결합에 의해 탈부착되도록 형성된 고정클립부;를 포함하고, 상기 본체에 수납된 담뱃갑의 뚜껑과 상기 덮개부가 개방된 상태에서, 상기 고정클립부를 상기 제1 고정편의 단부를 기준으로 상기 제2 고정편이 상기 제2 마그네틱과 탈착되도록 뒤로 젖힌 다음 상기 뚜껑의 내측을 삽입한 뒤 다시 상기 제2 마그네틱과 부착되도록 하여 담뱃갑의 뚜껑을 고정하여, 상기 덮개부를 개방하면 상기 뚜껑이 일체로 개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15] 또한, 상기 고정클립부는 상기 제1 고정편과 제2 고정편 사이에 상기 덮개부의 단부가 삽입된 상태에서 상기 제2 고정편에 내측에 돌기가 형성되도록 버어링 홈을 형성하고, 상기 제1 고정편과 제2 고정편을 압착하여 상기 덮개부에 고정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 [0016] 또한, 상기 덮개부가 닫혔을 때 상기 덮개부가 접히는 부분에 제1 안내선과 제2 안내선이 형성되고, 상기 덮개부가 개방되었을 때 상기 덮개부가 접히는 부분에 제3 안내선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고안의 효과

[0018] 본 고안에 의한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따르면, 담뱃갑 케이스의 덮개와 담뱃갑의 뚜껑을 고정클립으로 고정 시킴으로써, 담뱃갑 케이스의 덮개를 개방 시 담뱃갑의 뚜껑이 일체로 따라 개방됨과 동시에 담뱃갑의 몸체가 따라 상승되도록 하여 담배를 꺼낼 때 담뱃갑에 인쇄된 혐오 그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담배 꺼내기가 용이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20]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도 2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가 삽입되는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3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 뚜껑이 고정되는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4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 뚜껑이 고정된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도 5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 뚜껑이 고정되는 과정을 단면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고안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1] 본 고안의 이점 및 특징, 그리고 그것들을 달성하는 방법은 첨부되는 도면과 함께 상세하게 후술되어 있는 실시예들을 참조하면 명확해질 것이다.

[0022] 그러나 본 고안은 이하에서 개시되는 실시예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 있으며, 단지 본 실시예들은 본 고안의 개시가 완전하도록 하고,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고안의 범주를 완전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본 고안은 청구항의 범주에 의해 정의될 뿐이다. 명세서 전체에 걸쳐 동일 참조 부호는 동일 구성 요소를 지칭한다

[0023] 이하, 본 고안의 실시예들에 의하여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를 설명하기 위한 도면들을 참고하여 본 고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

[0025] 도 1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를 나타낸 도면이다.

[0026] 본 고안의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100)는 본체부(110), 덮개부(120) 및 고정클립부(130)를 포함하고 있다.

[0027] 본체부(110)는 상부가 개방되고, 담뱃갑(10)을 수용하기 위한 수용공간(111)이 형성되며, 전면 내부에 제1 마그네틱(112)이 구비된다.

[0028] 덮개부(120)는 본체의 상부에 개폐되도록 연장 형성되고, 내부에 제2 마그네틱(121)이 구비된다.

[0029] 고정클립부(130)는 덮개부(120) 단부에 클립 형태로 결합되되 외측과 내측이 각각 제1 고정편(131)과 제2 고정편(132)으로 구분되고, 제2 고정편(132)은 제1 고정편(131) 보다 길게 연장되어 연장된 부분이 제2 마그네틱(121)과 탈부착되게 자성 결합되고, 제1 고정편(131)과 대향되는 부분이 제1 마그네틱(112)과 자성 결합되도록 형성된다.

[0030] 여기서, 본체에 수납된 담뱃갑(10)의 뚜껑(12)과 덮개부(120)가 개방된 상태에서 고정클립부(130)를 제1 고정편(131)의 단부를 기준으로 제2 고정편(132)을 제2 마그네틱(121)과 탈착되도록 뒤로 젖힌 다음 담뱃갑 뚜껑(12)의 내측에 삽입한 뒤 다시 제2 마그네틱(121)과 부착되도록 하여 담뱃갑(10)의 뚜껑(12)을 고정하여, 덮개부(120)를 개방하면 담뱃갑(10)의 뚜껑(12)이 일체로 개방됨과 동시에 담뱃갑(10)의 몸체(10)가 따라 상측으로 이동되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31] 도 2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가 삽입되는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0032] 본 고안의 담뱃갑 케이스(100)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종이 담뱃갑(10)과 동일한 구조로 상부 후면에서 회동되어 상부 전면으로 덮어 씌워지는 형태이다.

[0033] 이때, 본체부(110)는 상부가 개방되어 담뱃갑(10)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공간(111)이 형성된다. 그리고 본체부

(110)의 전면 상부에 제1 마그네틱(112)을 구비한다. 여기서 제1 마그네틱(112)은 본체부(110)의 상부 후면에서 상부 전면으로 덮어 씌워지는 덮개부(120)가 본체부(110) 상부에 덮어 씌워져 닫힌 상태를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덮개부(120) 단부에 고정클립부(130)를 결합하여 고정클립부(130)가 제1 마그네틱(112)과 탈부착됨에 따라 덮개부(120)가 닫혀 있을 때 고정할 수 있도록 한다.

- [0034] 구체적으로, 고정클립부(130)는 덮개부(120)의 단부에 클립 형태로 결합되어 고정된다. 이때 고정수단으로는 제2 고정편(132)에 버어링 홈(133)을 형성하되 제1 고정편(131)의 일측면과 대향하는 제2 고정편(132) 일측에 형성하여, 버어링 홈(133)에 의해 형성된 돌기를 형성하고 제1 고정편(131)과 제2 고정편(132)을 압착하여 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35] 즉, 제1 고정편(131)과 제2 고정편(132) 사이에 덮개부(120)의 단부를 삽입하고, 제2 고정편(132) 내측으로 돌기가 형성되도록 버어링 홈(133)을 형성한 다음 압착하여 덮개부(120)가 고정되도록 한다.
- [0036] 한편, 고정수단으로는 제1 고정편(131) 또는 제2 고정편(132) 내측에 바늘과 같은 돌기를 형성하여 덮개부(120)에 고정되거나, 본드나 접착제와 같은 물질로 고정될 수도 있다.
- [0037] 그리고, 고정클립부(130)는 덮개부(120) 외측의 제1 고정편(131)과 내측의 제2 고정편(132)으로 구분되고, 제2 고정편(132)은 제1 고정편(131) 보다 더 길게 연장되어 연장된 부분이 덮개부(120)의 제2 마그네틱(121)과 탈부착된다. 아울러 제2 고정편(132) 중 제1 고정편(131)과 대향되는 부분은 제1 마그네틱(112)과 탈부착된다.
- [0038] 또한, 덮개부(120)에는 본체부(110)에 닫힐 때 접히는 부분에 제1 안내선(122)과 제2 안내선(123)이 형성될 수 있다.
- [0039] 구체적으로, 덮개부(120)는 본체부(110) 상부에서 개폐되도록 형성된다. 여기서 덮개부(120)가 개방되었다가 닫힐 때 덮개부(120) 중 담뱃갑(10)의 상부 모서리와 대향되는 부분이 접히기 때문에 덮개부(120)가 닫힐 때 담뱃갑(10)의 외형과 대응되며 접힐 수 있도록 제1 안내선(122)과 제2 안내선(123)이 각각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40] 더 나아가, 덮개부(120)와 본체부(110)가 연결되는 경계면에도 제3 안내선(124)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41] 이때, 덮개부(120)는 러버(rubber), 우레탄(urethane), 실리콘(silicon), 가죽, 섬유 중 어느 하나로 형성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제1 안내선(122) 내지 제3 안내선(124)은 고주파 용착으로 형성될 수 있다.
- [0042] 아울러, 본체부(110) 또한 덮개부(120)와 같은 재질로 형성될 수 있다.
- [0043] 또한, 본체부(110)와 덮개부(120)는 제1 안내선(122) 내지 제3 안내선(124)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내부에 심(미도시)이 구비될 수 있다.
- [0044] 여기서, 심(미도시)은 본체부(110)와 덮개부(120)의 외형 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드(hard)한 재료로 구비될 수 있다.
- [0045] 도 3은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 뚜껑이 고정되는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고, 도 4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 뚜껑이 고정된 모습을 나타낸 도면이다.
- [0046] 도 3 내지 도 4를 참조하면, 덮개부(120) 단부에 결합된 고정클립부(130)는 제1 고정편(131)의 단부를 기준으로 지렛대 삼아 제2 고정편(132)을 뒤로 젖히면 제2 고정편(132)이 제2 마그네틱(121)과 탈착되면서 벌어지게 된다.
- [0047] 그리고, 그 사이에 담뱃갑(10)의 뚜껑(12) 내측을 삽입하고 다시 제2 고정편(132)을 제2 마그네틱(121)에 부착시키면 담배값의 뚜껑(12)이 제2 고정편(132)에 고정되는 것이다.
- [0048] 이때, 도시하지는 않았지만, 덮개부(120)는 고정클립부(130)의 제2 고정편(132)이 제1 고정편(131)의 단부를 지렛대 삼아 뒤로 젖혀질 때 접히는 부분에 제4 안내선(미도시)이 더 형성될 수 있다.
- [0049] 도 5는 본 고안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마그네틱 담뱃갑 케이스에 담배 뚜껑이 고정되는 과정을 단면으로 나타낸 도면이다.
- [0050] 도5의 (a)를 참조하면, 덮개부(120)에서 고정클립부(130)가 뒤로 젖혀진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덮개부(120)와 담뱃갑(10)의 뚜껑(12)을 고정시키기 위해 고정클립부(130)를 제1 고정편(131)을 기준으로 지렛대 삼아 뒤로 젖혀서 제2 고정편(132)이 제2 마그네틱(121)과 탈착되도록 하여 그 사이에 담뱃갑(10) 뚜껑(12)의 내측을 삽입

후 다시 제2 고정편(132)을 제2 마그네틱(121)에 부착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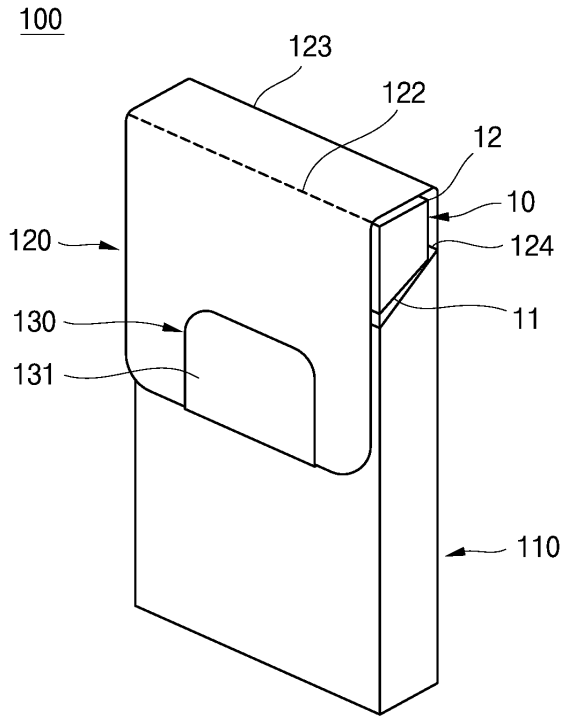
- [0051] 여기서, 담뱃갑(10) 뚜껑(12)의 내측은 제2 고정편(132)과 제2 마그네틱(121)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자력에 의해 고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 [0052] 도5의 (b)를 참조하면, 뒤로 젖혔던 고정클립부(130)를 다시 원상태로 위치하여 제2 고정편(132)과 제2 마그네틱(121) 사이에 담뱃갑(10) 뚜껑(12)의 내측을 고정하면 담뱃갑(10)은 하단이 담뱃갑 케이스(100)의 하단에서 이격된 거리에 고정된다.
- [0053] 즉, 담뱃갑 케이스(100) 내에 수납된 담뱃갑(10)은 덮개부(120)가 개방되면서 담뱃갑(10)이 상승되도록 하여 흡연자가 담뱃갑(10)에서 담배를 꺼낼 때 보다 용이하게 꺼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0054] 도 5의 (c)를 참조하면, 고정클립부(130)에 담뱃갑(10) 뚜껑(12)의 내측을 고정하고 덮개부(120)를 닫으면 담뱃갑(10)의 하단이 담뱃갑 케이스(100)의 수용부 하단에 안착되면서 수납하게 되는 것이다. 즉 반대로 덮개부(120)를 개방하게 되면 도 5의 (b)와 같이 상승하게 된다.
- [0055] 이와 같은 구조에서 담뱃갑 케이스의 덮개와 담뱃갑의 뚜껑을 고정클립으로 고정시킴으로써, 담뱃갑 케이스의 덮개를 개방 시 담뱃갑의 뚜껑이 일체로 따라 개방됨과 동시에 담뱃갑의 몸체가 따라 상승되도록 하여 담배를 꺼낼 때 담뱃갑에 인쇄된 혐오 그림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담배 꺼내기가 용이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0057] 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는 본 고안이 그 기술적 사상이나 필수적인 특징을 변경하지 않고서 다른 구체적인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에서 기술한 실시예들은 모든 면에서 예시적인 것이며 한정적이 아닌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본 고안의 범위는 상기 상세한 설명보다는 후술하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의하여 나타내어지며, 특허청구의 범위의 의미 및 범위 그리고 그 균등 개념으로부터 도출되는 모든 변경 또는 변형된 형태가 본 고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부호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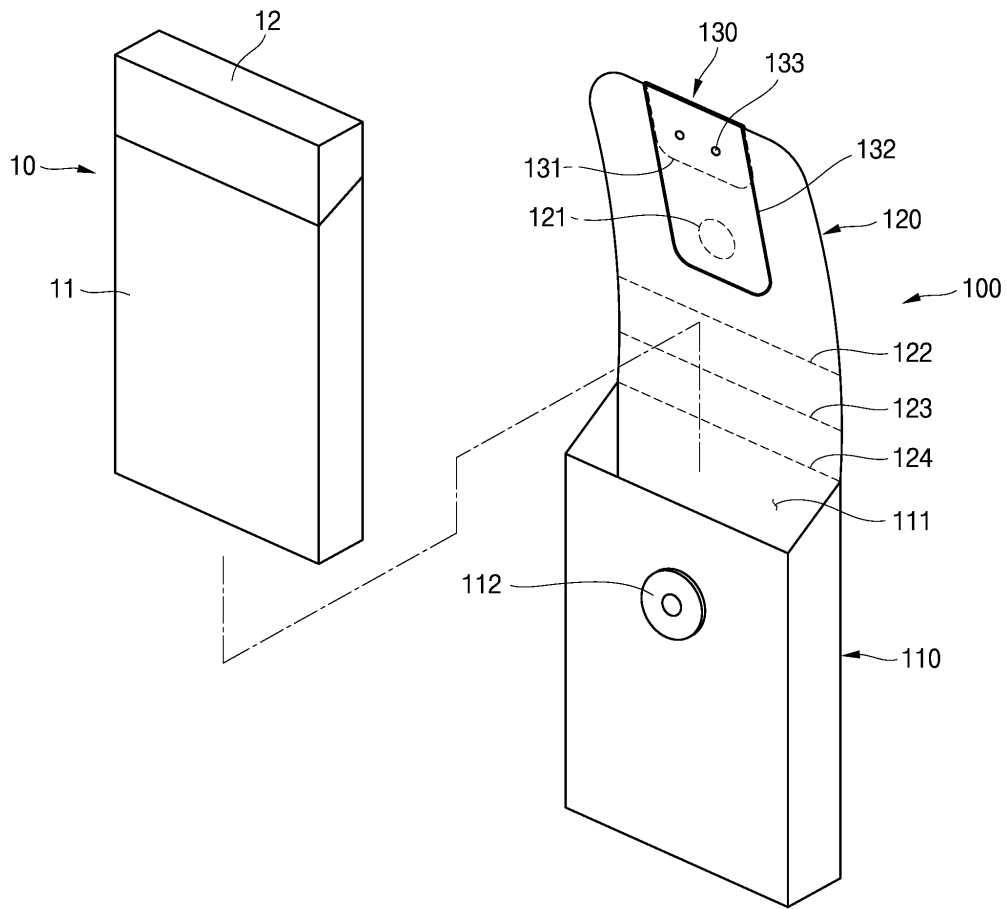
- | | | |
|--------|--------------|-------------|
| [0059] | 10: 담뱃갑 | 11: 몸체 |
| | 12: 뚜껑 | 100: 케이스 |
| | 110: 본체부 | 111: 수용공간 |
| | 112: 제1 마그네틱 | 120: 덮개부 |
| | 121: 제2 마그네틱 | 122: 제1 안내선 |
| | 123: 제2 안내선 | 124: 제3 안내선 |
| | 130: 고정클립부 | 131: 제1 고정편 |
| | 132: 제2 고정편 | 133: 버어링 홈 |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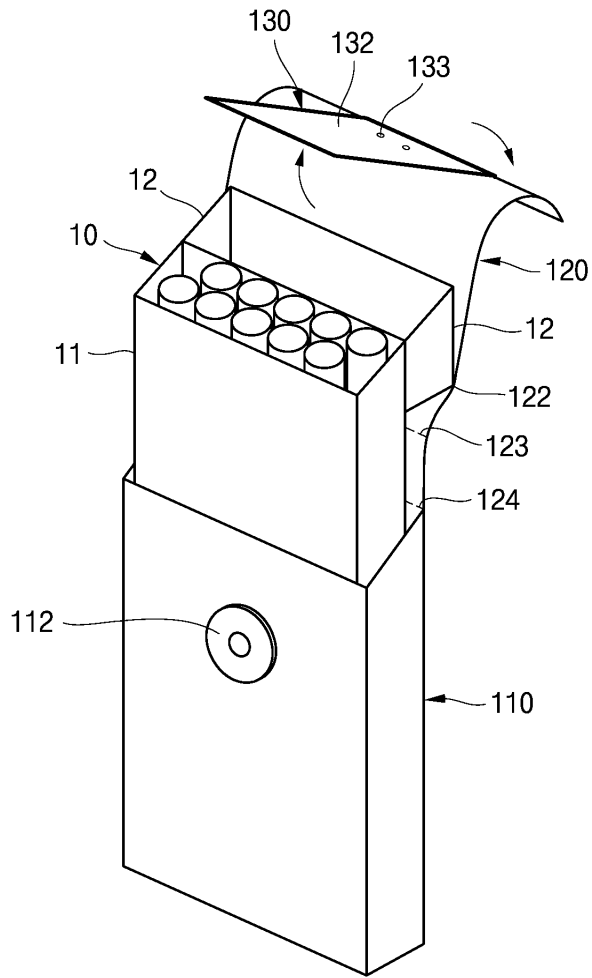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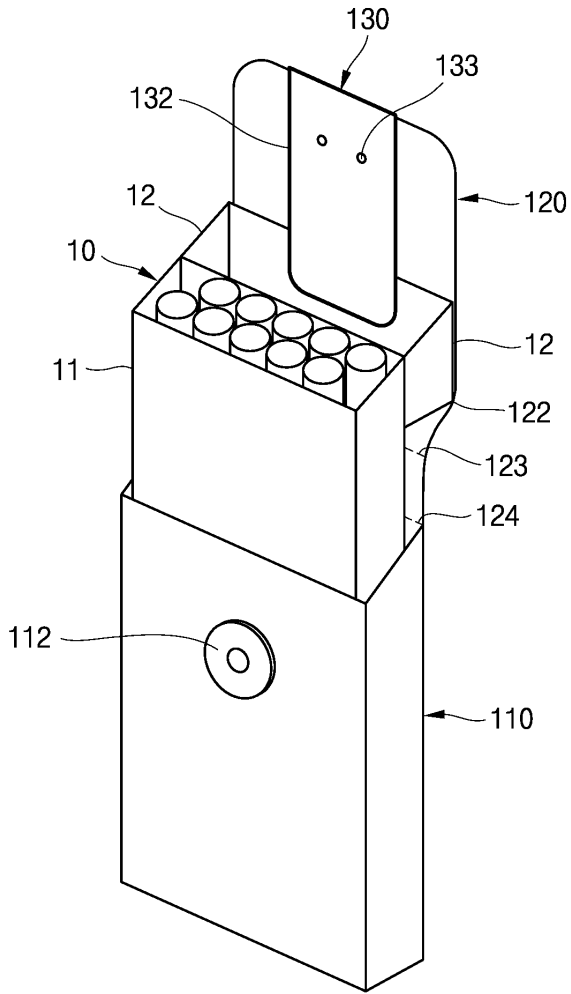
도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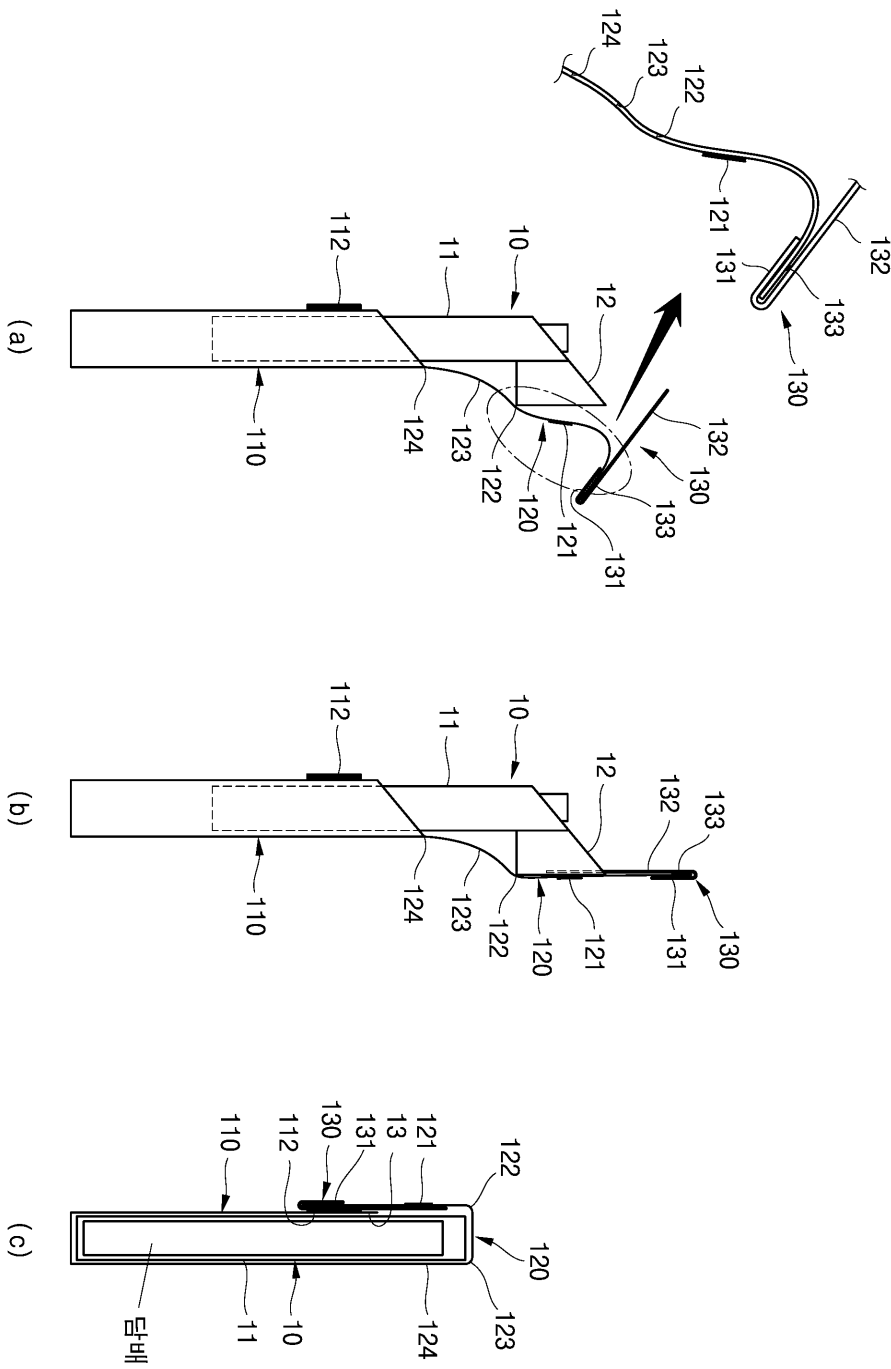
도면3



도면4



도면5



【심사관 직권보정사항】

【직권보정 1】

【보정항목】 청구범위

【보정세부항목】 청구항 제1항

【변경전】

상기 본체

【변경후】

상기 본체부